

# 水協發足以後の 水産金融에 관한 研究

## A Study on Fisheries Financing after Establishment of Fisheries Cooperatives

金 敬 浩\*

Kyoung-Ho Kim

### 目 次

<p>I. 序 言</p> <p>II. 水協設立의 社會經濟的 背景</p> <p>III. 水産金融과 水協信用事業</p> <p style="padding-left: 20px;">1. 組合金融의 必要性</p> <p style="padding-left: 20px;">2. 水産資金의 一元化와 水協自體資金</p> <p>IV. 水産金融의 構造와 形態</p> <p style="padding-left: 20px;">1. 水産資金의 需給과 金融形態</p>	<p>2. 財源別 資金構造</p> <p>3. 用途別 資金構造</p> <p>V. 水協의 金融活動分析</p> <p style="padding-left: 20px;">1. 水協信用事業의 特質</p> <p style="padding-left: 20px;">2. 水協信用事業活動分析</p> <p>VI. 水協信用事業의 問題點</p> <p>VII. 結 言</p> <p style="padding-left: 20px;">Summary</p>
---	--

### I. 序 言

解放後 韓國經濟는 수차례의 過渡期的 混亂을 거치면서 서서히 自主的 近代化過程을 履行해 왔다. 動亂以後 外資導入에 의한 經濟再建, 60年代의 經濟開發 5個年計劃, 70年代의 重化學工業育成과 輸出드라이브政策 등에 힘입어 韓國經濟는 高度成長의 기틀을 다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같은 近代化過程에서 가장 問題가 된 것은 資源不足, 人口過剩, 資本蓄積의 不足등 韓國經濟構造의 脆弱性이 아닐 수 없었다. 特히 資本蓄積은 日帝의 對韓植民地政策과 6.25動亂으로 거의 全無한 實情이었다.

루이스(W. A. Lewis)에 의하면 後進國經濟開發의 基本問題는 資本蓄積이며 이는 國民의 自發的 貯蓄에 의해 이루어 진다고 보았다.<sup>1)</sup> 즉 資本蓄積이 아직 微弱하여 資本의 限界生産性이 勞動의 그것보다 높은 後進國에서는 投資가 成長의 必須條件으로 登場하게 되며, 이 投資 特히 誘發投資보다 獨立投資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投資資金의 調達이 가장 重要한 當面課題가 된다. 水産業의 境遇도 우리나라 産業構造上 極히 落後된 産業部門이므로 後進性을 脫皮하기 위해서는 實物形態이든 金融形態이든 間에 實質的인 資本蓄積이 必要하며 이를 위한 投資資金으로서의 財源確保와 金融問題가 重要한 課題로 登場하게 됨은 當然한 일이다.

水産業部門의 資金供給은 主로 客主, 旅閩, 契 등 韓國在來의 私金融이 水産金融의 主流를 形成하였으며 近代의 金融機關에 의한 漁民惠澤은 그 受惠對象에서 除外되거나 혹은 極히 微微한 程度의

\* 釜山女子大學 助教授

1) 朴昇, 韓國經濟成長論, 日新社, 1973, p. 91.

額數에 不過하였다. 따라서 水産信用의 大部分이 前期的 資本이었으므로 이는 産業資本化되지 못하고 오히려 産業資本을 侵蝕하는 한편 金融秩序와 經濟構造全般에 非効率性만 招來하였다.

이러한 狀況下에서 經濟的 弱者의 相互防禦組織인 水産業協同組合의 設立은 當然한 歸結이며 특히 自己資本의 蓄積이 貧弱한 零細漁家經濟體制下에서 漁民을 相對로 水協信用事業을 통한 水産金融의 圓滑化를 기하고저한 水協信用制度의 確立은 結果的으로 漁民의 資金借入度가 높고 反面에 信用可用度가 낮다는 二律背反性을 解決하는데 크게 寄與하였다고 할 것이다.

## II. 水協設立의 社會經濟的 背景

### 1. 漁村經濟의 窮乏

解放後 漁村經濟는 日帝의 對韓殖民地政策에 의한 掠奪的 支配의 後遺症과 6.25動亂으로 인한 未曾有의 被害로 말미암아 沈滯狀態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日帝時代에는 漁業權의 免許와 許可, 水産資金融資 등에 있어 日本人에게 偏重的 支援를 함으로써 日本의 漁業支配權을 強化하였으며 또한 漁業生産活動과 流通過程 및 私金融등에 積極 關與함으로써 韓國漁村에 대한 徹底한 收奪行爲를 敢行하였다. 그 結果 解放後 우리에게 남겨진 遺産은 在來式 漁具·漁法, 自家消費爲主의 零細漁家, 失職漁民의 增加등 殖民地政策의 殘滓뿐이었다.

여기에다 解放後 南北分斷에서 오는 南韓의 工業化水準은 事實上 낮을 수 밖에 없었으므로 迂廻生産度가 높은 水産業의 境遇 그 波及效果는 더욱 클 수 밖에 없었다. 水産業發展의 基盤이 되는 造船·造機業이 發達치 못하여 漁船饑饉現象, 水産資材難이 極甚하였으며 이에 따라 漁業生産量減少, 漁民所得減少, 購買力喪失, 水産業投資萎縮등 貧困의 惡循環狀態에 들어가고 말았다.

이에 政府는 解放以後의 日本經濟와의 斷折, 南北兩斷으로 인한 産業構造의 畸型化, 民族資本의 不在 등으로 過渡期的 混亂期에 빠진 韓國經濟를 自立經濟의 盤石위에 올려놓기 위하여 美國등 여러 外援機關의 援助를 얻어 그 基盤驅逐事業을 實施하였으나 6.25動亂으로 完全히 水泡로 돌아갔다. 水産業部門도 이와같은 政府施策에 힘입어 꾸준한 回復勢를 보이기 시작하였으나 動亂으로 인해 다시 惡化狀態에 빠지고 말았다. 6.25動亂으로 인하여 水産業이 입은 被害는 3億8千萬弗로서 全産業被害額의 10.8%에 達했으며 이중 漁船被害가 가장 酷深하여 水産業被害의 55.6%를 차지하였고 이때 破損되거나 遺失된 漁船隻數만하여도 1萬餘隻에 達하였다.<sup>2)</sup> 그 외에도 建物, 加工處理施設 등의 被害도 大端히 컸다. 이같은 莫大한 財產的 被害로 말미암아 生産能力은 完全히 消滅되고 말았으며 더우기 看過할 수 없는 것은 南北分斷으로 인한 漁場喪失과 操業區域의 狹小로 恒久的 被害를 입은 點이라 할 수 있다.

이와같이 解放後 過渡期的 混亂과 6.25動亂으로 인해 漁村經濟는 極히 窮乏하지 않을 수 없었고 더우기 解放後 他産業의 未發達로 인한 水産人口의 急増과 混亂期를 틈탄 漁業權濫發, 不正漁業盛行 등 漁業秩序의 紊亂은 漁村經濟를 더욱 困境에 빠지게 하였다.

2) 水協中央會, 韓國水産業團體史, 1980, pp. 260~261.

## 2. 水産團體의 運營紊亂

解放以後 存續하고 있던 水産團體는 漁村經濟를 向上시키고 漁民의 福利增進을 꾀한다는 本來의 機能과 目的을 充實히 遂行하지 못했다. 日本人의 漁業進出과 發展을 위한 官僚的 機關으로서의 制度的殘滓를 그대로 지니고 있던 當時의 水産團體들은 그 本來의 使命을 다하기는 커녕, 오히려 漁民을 拘束하고 搾取하는 機關으로 轉落하고 말았다.

解放直後 存續하고 있던 水産團體로서는 漁業組合과 이를 會員으로 하는 漁業組合聯合會, 業種別로 組織한 水産組合 그리고 이 두團體를 會員으로 하는 朝鮮水産業會가 있었다. 日帝敗亡直後에 實施된 水産團體統合의 產物로 創設되었던 朝鮮水産業會는 解放後 美軍政廳의 代行機關으로서 水産業全般에 걸친 統制機能을 遂行했으며, 1949年 1月 韓國水産業會로 改稱된 以後에도 계속 水産團體의 中央機關으로서 이 機能을 遂行해 왔다. 그러나 1949年 11月 韓國水産業會로 改稱된지 不過 10個月만에 韓國水産業會는 그 業務遂行過程에서 여러가지 物議를 일으키고 있다하여 大統領諭示에 의해 基本事業實施機能을 喪失당하고 말았다. 이러한 措置로 말미암아 韓國水産業會는 系統金融, 系統購買, 委託販賣등 主要經濟事業의 實施를 中斷할 수 밖에 없었고, 다만 非經濟事業으로서의 指導事業만이 許容되었다.<sup>3)</sup> 이는 水産金融上 大部分의 漁民들로부터 融資機會를 剝奪하는 結果를 가져왔으며 水産資材購入價格을 騰貴시켜 顯著한 狹狀價格差現象을 나타나게 하였고, 販賣機能不振으로 委販秩序紊亂, 客主勢力擴張 등을 招來케 하였다. 물론 韓國水産業會의 機能中止로 인해 一線會員組合의 機能이 一律적으로 停止된 것은 아니다. 中央統制機能이 不在한 態狀下에서 會員組合相互間의 對立, 軋轢, 競爭은 極히 深化되고 業務는 非能率的이 되어 混亂만 惹起시키는 結果만 招來하였다. 따라서 當時의 水産團體들은 모두 赤字運營을 꾀치 못하였고, 이를 補填하기 위하여 漁民들로부터 過重한 手數料를 要求하는 한편 無原則的인 豫算執行을 恣行함으로써 漁民收奪과 組合運營不安의 程度는 더욱 深化되어 갔다. 1962年 2月 18日 當時의 朴正熙最高會議長은 全南地方의 初度巡視에서 아직도 漁民을 搾取하는 組合役員이 있다면 모두 拘束하겠다고 까지 言命한 바 있어 當時의 水産團體運營의 紊亂이 어느 程度였던가를 짐작할 수 있다.<sup>4)</sup>

이와같은 水産團體運營의 紊亂과 中央統制機關으로서의 機能喪失을 正常化시키기 위해 1952年 11月 4日 韓國水産業會는 그 名稱을 大韓水産中央會로 바꾸고 새로운 出發을 시작하였으며, 1961年 6月 8日에는 海務廳의 「水産團體整備廢合要綱」에 의해 赤字運營을 계속해 오는 漁業組合을 適切한 規模로 廢合하여 組合運營의 內實化를 기하였다. 이때 水産團體整備廢合要綱에 依據 廢合된 漁業組合의 數는 64個에 이르며, 水産組合도 當時 20個中 不實經營으로 存續價値가 없다고 認定된 7個組合을 解散시키고 13個組合만 存續시켰다. 또 漁業組合과 大韓水産中央會의 中間에 介在하고 있던 漁業組合聯合會도 不必要한 團體로 認定하여 解散시키고 그 業務를 大韓水産中央會에 引繼시켰다. 따라서 1961年 8月 水産團體整備廢合完了後의 水産團體組織은 大韓水産中央會를 最上部組織으로 하고 그 傘下에 88個의 漁業組合과 13個의 水産組合을 가진 組織으로 整備하였으며, 이것이 水産業協同組合

3) 水協中央會, 水協 20年史, 1982, p. 62.

4) 崔正統, 水産業協同組合의 組織 및 機能의 變遷過程에 관한 研究, 釜山水産大學 博士學位論文, 1982, p. 27.

### 水協發足以後の 水産金融에 관한 研究

發足以前の 最終的인 水産團體組織의 形態라 할 수 있다. 말하자면 解放以後 오래동안 跛行狀態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植民地殘滓의 水産團體는 解放後 18年, 統合 50年間이란 半世紀의 歷史를 남기고 健全한 單位組合으로 整理되어 水産業協同組合의 基礎를 確立하는데 寄與하게 되었다.<sup>5)</sup>

### 3. 水産業協同組合의 發足

前述한 바와 같이 解放後 社會經濟的 混亂과 水産團體의 運營紊亂은 水産業協同組合設立을 促進하는 契機가 되어 1961年 4月 1日 드디어 全國的인 水産業協同組合의 發足を 보았다.

事實 解放後부터 水協發足以前까지 存在해 왔던 水産團體들이 數的으로만 亂立한 채 諸機能을 遂行하지 못한 것은 立法的 過程을 통한 制度마련이 未洽한데 그 原因이 있다고 볼 수 있다. 日本의 境遇 終戰後 漁村의 混亂을 長期間 放置해 둘 수 없다하여 新漁業法이 成立되기 前에 이미 水産業協同組合法을 成立, 運用해 온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3年間的 美軍政이 끝나고 大韓民國政府가 樹立될 때 까지도 過去 朝鮮漁業令과 그 附屬法令의 支配下에 있었으며, 그 後 1953年 우리나라 獨自的인 水産業法을 制定·公布하였으나 그 整備過程에 있어 水産團體制度에 관한 整備는 留保되고 말았다. 따라서 水産團體에 관한 諸條項은 水産業에 관한 組合法이 制定될때까지 舊時代의 法的條項을 그대로 갖고 있었다.<sup>6)</sup>

協同組合設立에 관한 最初의 案은 1948年 10月 30日 農林部農村指導局이 草案한 「協同組合組織法案」이다. 이 案은 農業, 漁業, 商業, 工業 및 鑛業등 모든 業種의 經濟的 弱者를 網羅하는 統合的 性格의 協同組合의 設立에 관한 構想으로서 全文 4章과 61條로 構成된 綜合立法案의 性格을 띠고 있다. 이 法案은 現 農村의 實情으로 이와같은 協同組合의 自意的 組織이 不可能하다는 理由로 成立을 보지 못했으며 그 以後 1953年 11月 11日 金融組合을 改編하여 協同組合을 組織코자 한 「産業組織法案」도 마찬가지로 理由로 失敗로 돌아갔다.

이와같이 1950年代의 協同組合에 대한 綜合立法構想이 失敗로 돌아가자 政府는 産業別로 獨自的인 制度創設을 試圖하였고 이에따라 農協法은 農林部가 水協法은 海務廳이 中小企業協同組合法은 商工部가 各各 主管部署가 되어 實施하였다. 農協法의 境遇에 農林部는 美國의 農業金融專門家 존슨(E. D. Johnson)과 農協專門家 쿠퍼(J. L. Ceoper)를 招請하여 韓國農協組織에 대한 建議案을 提出케 한 結果, 이 建議案을 받아들여 農林部는 經濟事業을 擔當하는 農協法과 信用事業을 擔當하는 農銀法을 制定·施行하게 되었으며 이는 5.16革命後 農協法 하나로 統合하게 되었다. 水協法도 이에 발맞추어 1954年, 當時 商工部 海務廳에 의해 「水産業協同團體法」을 내놓았으며 이 審議가 當時 審議當局의 事務輻輳, 農協法案成立에 대한 鎮痛의 連續 등으로 遲延되자 政府는 이 法案을 補完하여 1961年 「水産業協同組合法」案을 다시 내놓았다. 이 法案은 當時 5.16 革命政府에 의해 別다른 論難없이 1962年 1年 20日 制定을 보았으며 同年 4月 1日을 기해 一齊히 施行하게 되었다. 水協法의 成立으로 인해 舊水産團體의 漁業組合은 地區別漁協으로, 水産組合은 業種別漁業 및 水産物製造組合으로, 大韓

5) 張設鏞, 漁村契에 관한 研究, 太和出版社, 1980, p. 43.

6) 水協中央會, 前掲書, p. 66.

水産中央會는 水協中央會로 各各 改編하였다.

이리하여 水協은 協同組合의 基本原理에 따라 目的, 組合員加入, 事業運營, 利用方法 등에 있어 過去 水産團體와는 다른 自主의이고 民主的인 制度를 採擇해 名實共히 漁民을 위한 水産團體로서의 性格을 갖고 出發하였다.

### Ⅲ. 水産金融과 水協信用事業

#### 1. 組合金融의 必要性

水産金融은 漁業, 水産養殖業, 水産製造加工業등 水産部門에 必要한 資金을 調達, 融通하여 水産業의 生産力과 所得의 增進을 위해 支援하는 金融이라 할 수 있다. 水産業은 自然的 諸條件의 制約을 크게 받아 生産이 不規則·不安定할 뿐만 아니라, 魚價變動의 幅이 크고, 漁船·漁具·漁業權등 金融의 物的 擔保物인데도 不拘하고 그 金錢의 交換價値를 評價하기는 困難하다. 따라서 投資對象으로서의 水産業은 收益率과 危險의 trade-off 關係로 說明되는 投資의 經濟性觀點에서 볼때 危險이 큰 投資對象이 될 수 밖에 없으며 貸出資金의 最適運用을 기하려는 一般金融機關의 關心範圍에서 벗어날 수 밖에 없다. 根本的으로 水産業 部門에 있어서의 資金梗塞의 原因은 이와같은 水産業自體가 가지고 있는 危險性에 있으며 이 危險性으로 인하여 水産業 部分에도 資本制限<sup>7)</sup>이 存在하게 되며, 外部資本의 流入이 忌避되어 水産業의 擴大再生産을 不可能하게 하고 있다. 이는 現 우리나라 水産業의 構造가 極少數의 資本制의 大規模漁業을 除外하고는 大多數 零細漁家로 形成되어 있다는 事實로도 實證할 수 있다.

이와같이 水産業部門에 있어서 資金梗塞現象은 他產業과 같은 價格機構의 機能이나 一般金融機關을 통한 資金供給方法을 가지고는 解決할 수 없다. 原始的 資本蓄積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所得水準 또한 低位段階에 있는 水産業部門에서 漁民들의 自發的 貯蓄에 의한 資本形成을 기하기란 어려운 形便이며 그렇다고 해서 一般金融機關으로부터 滿足할 만한 資金供給도 期待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水産金融이 水産業發展을 위해 充分한 機能을 遂行하기 위해서는 역시 經濟的 弱者들의 相互防禦組織인 水協을 통한 制度金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은 두말할 必要가 없다.

물론 水協發足以前에도 이와 같은 活動이 尠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다. 解放以後 存續해 왔던 舊水産團體에 의해서 比較的 低利資金의 融資가 이루어 졌으나 그 規模는 小額에 지나지 않았고 融資對象도 一部에게 制限되어 있었다. 이는 解放以前의 事情과도 크게 다를바 없으나 다만 그 融資對象이 主로 解放以前에는 日本人에게 偏重하였고 解放以後에는 比較的 規模가 큰 小數의 漁業者에게

7) 資本制限이라는 것은 大體 어떠한 現象을 일컫는 것인가 하는 물음에 대하여 尠즈는 不安定經濟에 있어서의 農業(agriculture in on unstable Economy)이라는 著書에서 「資本制限에 관하여 우리는 農場에 있어서 資本의 餘分の 投下量으로 부터의 報酬率은 資本의 一般利率보다도 크지마는 農業者는 主로 그들이 直面하는 經濟的 不安定으로 말미암아 附加的 資本의 借入을 願치 않든가 혹은 借入하려고 하여도 借入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意味한다(金仁台, 「韓國의 水産金融에 관한 研究」, 釜山水産大學 論文集, 第3輯(人文·社會科學), 1969, pp.12~13).

限定되고 있었다.<sup>8)</sup> 이런 狀況에서 水産業協同組合에 의한 體系的이고 制度的인 水産金融業務의 施行은 크다란 意味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水協의 信用事業은 組合員의 餘裕資金을 預受해서 資金이 必要한 組合員에게 融資하는 組合員相互間的 互惠金融이란 意義를 가지고 水協이 發足한 이듬해인 1963년부터 그 業務를 開始하였다. 農協의 境遇는 李朝末에 外割制度라든가 契 등과 같은 農協信用制度가 地方的으로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나 近代的 意味의 信用制度가 確立된 것은 日本 獨占資本이 露骨的으로 侵入해 들어오기 시작한 20世紀初의 일이었다고 農工銀行, 金融組合, 東洋拓殖會社가 當時의 農業信用의 主流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農業信用制度는 어디까지나 韓國의 農業發展에 寄與키는 커녕 오히려 不利한 作用만 하였다. 解放以後 韓國의 農業發展을 위한 農業信用制度의 主軸이 될 農工銀行이 1958年 4月 1日에 發足함으로써 이것이 韓國農業金融의 專擔機關으로서 발을 내딛게 되었다.<sup>9)</sup>

## 2. 水産資金의 一元化와 水協自體資金

水協은 1962年 下半期에 政府로부터 2億8千萬圓의 資金을 貸下받아 1963년부터 與信業務를 實施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當時의 資金規模는 漁民의 資金需要를 堪當할 수 없었고 더우기 過去舊 水産團體때 부터 비롯된 水産資金의 窓口多元化는 水産資金을 利用하려는 漁民의 不便을 加重시켰다.

水協法 第132條 ②項은 「中央會가 아니면 水産業에 관한 資金을 政府로부터 借入할 수 없다」고 規定하고 있었으나 當時 水産資金取扱銀行은 商業銀行, 中小企業銀行, 韓一銀行, 第一銀行, 殖産銀行 및 農協등 7個所에 達했고 이는 後에 農協과 産業銀行 및 水協中央會의 3機關으로 統合하였지만 資金利用上의 不便은 如前하였다.

그리하여 水産資金의 窓口一元化問題가 時急한 當面課題로 登場하게 되었으며 1964年 7月 9日 유승(USOM), 經濟企劃院, 産業銀行, 農協, 水協이 連席會議를 열어 段階的으로 産業銀行과 農協의 水産資金을 水協으로 移讓하도록 最終合議를 보았다. 이로부터 約 1年後인 1965年 4月 1日부터 具體的인 作業에 들어가 同年 4月 16日 마침내 水産資金의 一元化가 實現되었다. 이로서 水協은 그동안 無秩序하고 多元化된 水産金融體系의 一元化를 求心點으로 하여 中央會→組合→漁村契→漁民에 이르는 系統金融의 確立을 보게 된 것이다.

한편 水協의 運營資金은 1965年 水産資金一元化 以後에도 繼續的인 增加趨勢를 보여왔으나 그 資金의 財源이 거의 政府貸下金과 金融借入金등 外部資金에 依存하고 있었다. 水協의 信用事業이 名實共히 有無相通의 原理에 의한 組合員相互間的 互惠金融으로서의 役割을 遂行하기 위해서는 自體資金의 確保는 必要不可缺한 것으로서 自體資金이 確保되면 그만큼 水協은 獨自的이고 自律的인 業務處理가 可能해 질 뿐 아니라 外部資金의 借入에 따르는 諸般不便도 줄어들 것은 當然한 일

8) 水協中央會, 韓國水産業團體史, 1982, p. 433.

9) 農協中央會, 韓國農業의 分析. 1963, pp. 183~187.

이다.

<表-1>에서 알수있는 바와 같이 1962年 水協發足當時 水協調達資金 273百萬元中 外部借入金은 264百萬元으로서 96.7%를 차지하였으며, 1968年에도 外部借入金은 全體調達金額의 87.0%에 達해 調達資金이 外部借入에 크게 依存하고 있었다.

**水協調達 資金의 構成**  
(單位: 億원)

<表-1>

區分 年度別	自體造成金	外部借入金	計
1962	—	3	3
1963	1	6	7
1964	1	8	9
1965	3	19	22
1966	5	27	32
1967	10	63	73
1968	15	100	115
1969	31	154	185
1970	54	193	247
1971	64	252	316
1972	82	283	365
1973	123	291	414
1974	192	346	538
1975	294	415	709
1976	457	540	997
1977	639	786	1,425
1978	1,017	804	1,821
1979	1,283	1,386	2,669
1980	1,727	1,893	3,620
構成比(%)	47.7	52.3	100.0

註 : 構成比는 1980年度 基準임  
資料 : 水協中央會 年次報告書에서 作成

이와같은 資金調達上의 不均衡을 是正하기 위하여 水協은 1969年부터 1973年까지 5個年동안 100億원 自體資金造成運動을 展開하였다. 水協中央會 제8기 年次報告書에 의하면 100億원 自體資金造成 5個年計劃의 意義를 보며 漁民의 自體能力培養, 自律的 組合金融體制確立, 水産資金의 擴大供給 및 無擔保零細漁民에 대한 經濟的 自立機會賦與가 바로 그것이다. 水協은 이를 위해 1969年부터 全國系統組織에 14個의 受信店舖를 開設하여 受信業務를 시작함으로써 預受金確保에 全力을 다했으며 中央會 및 一線組合, 漁村契를 中心으로 信用組合를 結成하고 水産物委販代錢中 一部를 定期預置토록 하는 販賣積立金制度 등을 實施함으로써 貯蓄을 積極 獎勵하였다. 이러한 努力끝에 100億원 自體資金造成運動의 結果는 <表-2>에서 보는 바와 같이 目標額을 上廻하는 實績을 올렸을 뿐만 아니라 水協의 財務構造도 크게 改善되고, 財政의 外部依存度를 低下시켜 過去의 政策金融一邊度의 水産資金調達 패턴을 組合金融體制로 轉換시킨 契機가 되었다.

水協의 自體資金造成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1974年 6月부터 實施된 農漁村一兆원貯蓄運動과 相互金融事業으로 이어져 一層 拍車를 加하였다. 즉 水協中央會는 農漁村一兆원 貯蓄事業의 一環

**100億원 自體資金 造成實績**  
(1969年~1973年까지 5個年)

<表-2>

區 分	1969	1970	1972	1973
目 標 額	22	45	77	100
實 績	29	47	68	110

資料 : 水協中央會, 韓國水産業團體史,

#### 水協發足以後의 水産金融에 관한 研究

으로 1980년까지 738億원의 漁村貯蓄達成을 目標로 하는 새로운 自體資金造成計劃을 樹立하였으며, 이의 效果的인 達成을 위해 1974년에 全國一線水協에 67個의 相互信用店舖를 開設하기에 이른 것이다.<sup>10)</sup>

이로서 水協의 自體資金은 앞의 <表-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8年末 1,017億원으로 總資金調達額의 折半이 되는 55.8%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1980年末에도 全體構成比 47.7%로 自體資金造成運動이 시작된 1969년의 16.8%에 比하면 懸隔한 增加를 가져왔다.

### IV. 水産金融의 構造와 形態

#### 1. 水産資金의 需給과 金融形態

水産金融이 水産業部門의 資金流通에 관한 經濟現象을 意味한다면 金融去來의 目的物인 水産資金의 需要와 供給은 水産金融의 全般的인 實態를 把握하는 데 가장 基礎的인 資料가 된다고 볼 수 있다. 一般的으로 一産業部門의 資金需要는 當該産業이 現在의 經營規模를 그대로 維持, 存續시키기 위해 必要한 流動資金需要와 當該産業의 擴大再生産을 위한 設備投資에 必要한 固定資金需要로 大別해 볼 수 있으며 이와같은 資金需要를 豫測하는 方法도 資金의 性格上 多少 相異하다고 볼 수 있다. 즉 短期性 流動資金의 境遇는 漁業經營에 必要한 支出費日別 資金所要額을 前年度 實績値와 物價上昇率, 漁家の 豫想規模擴大率 등을 勘案하여 產出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하여 產出된 漁家戶當 資金需要額을 全漁家에 適用시켜 年間 總資金需要額을 推定할 수 있다.

한편 中長期性 固定資金需要는 해로드(R. F. Harrod)의 成長모형을 利用함으로써 推定 可能하다.  $GC=S$ 라는 方程式을 漁業内部에 局限시켜 보면  $G=$ 漁業의 成長率,  $C=$ 漁業의 資本係數,  $S=$ 漁業内部의 貯蓄率로 될 것이며,  $S$ 를 다시 表現하면  $S=\frac{S}{Y}$ 가 된다. 여기서  $S=$ 漁業內의 貯蓄額,  $Y=$ 漁業所得이며 따라서  $GC=S$ 라는 式은  $S=Y \cdot G \cdot C$ 로 變形된다. 여기서  $C$ 는 常數이고  $Y$ 는 賦與된 數値이며  $G$ 는 目的變數이고  $S$ 만이 從屬變數가 된다. 따라서  $S$ 가  $Y$ 라는 漁業所得下에서  $G$ 라는 成長을 이루기 위한 總資金所要量이 되는 것이다.<sup>11)</sup> 이와같이 해서 推定된 資金需要를 얼마나 充足시켜 줄 수 있는나 하는 것은 水産金融의 가장 重要한 問題가 된다.

1975年 水協中央會에서 實施한 「漁業信用調査報告」에 의하면 出漁準備所要資金의 境遇에 漁家戶當 平均資金所要額 6,996,256원中 自己資金으로 調達可能한 額數는 總資金所要額의 56.6%에 達하는 3,962,607원이며, 漁業開發 및 經營改善을 위한 所要資金의 境遇는 自己資本으로 調達可能한 資金의 比重은 34.2%로 나타나 있다.<sup>12)</sup> 이는 우리나라 漁家가 漁業經營에 必要한 短期流動資金과 長期 固定資金의 需要를 相當部分 外部借入에 依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同報告書에 의하면 外部借入金의 資金供給源別 構成比가 水協 45.9%, 一般銀行 16.2%, 客主等 私債業者 37.9%인바 水協을 통한 資金支援規模가 漁民의 資金需要를 充足시키기에는 아직 未洽하

10) 水協中央會, 前掲書, p. 305.

11) 朴基赫, 新農業經濟論, 博英社, 1977, p. 194.

12) 水協中央會, 漁業信用調査報告書, 1975, p. 184.



수 산 경 영 른 집

다는 事實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은 事實은 보다 最近의 調査에서도 立證되고 있다. 1979年 水協이 沿近海, 內水面 및 養殖漁業部門 63個業種을 對象으로 調査한 營漁資金所要額調査에서 보는 바와 같이 總營漁資金所要額 1,528億원中 水協이 供給한 資金規模는 600億원에 그쳐 全體資金需要額의 39.3%에 不過하였음을 <表-3>에서 볼 수 있다.

營漁資金所要額 對 供給率(1979)

<表-3> (單位: 億원)

漁業別	區分	件 數(件)	所 要 額	供 給 額	供給率(%)
漁 船 漁 業		32,443	736		—
沿 岸		27,400	232		—
近 海		5,043	504		—
定 置 漁 業		545	65		—
第 3 種 共 同 漁 業		3,653	38		—
內 水 面 漁 業		2,203	11		—
計		38,844	850	499.2	58.7
養 殖 漁 業		45,405	678	100.8	15.0
總 計		84,249	1,528	600.0	39.3

註① 위에서 件數는 沿近海養殖, 內水面 등 漁業의 總63個 業種의 經營體數인.

② 所要額 調査는 1979. 1. 20~1979. 4. 30간에 實施한 것이며 74年 7月의 油價引上前 調査이므로 現在 所要額은 이보다 顯著히 增加할것임.

資料: 水協中央會, 水協 20年史,

이와같은 水協등의 制度的 金融이 갖는 信用供給上的 制限은 相對的으로 私金融의 膨脹을 가져 왔다고 하겠다. 漁村에 있어서의 私金融은 制度的 金融이 가지는 資金供給의 規模와 時期의 制約에서 脫皮하기 위한 應急手段으로서 漁家資金供給의 絶對值가 不足한 現時點에서 必要惡的인 役割을 遂行해왔다. 따라서 制度的 金融에서 疏外된 漁民들은 利率의 高低나 償還期間에 關心을 쓰지 않은 채 私金融에 依存해 온 實情이며 따라서 漁民의 모든 經濟剩餘는 私債利率을 支拂하기에 汲汲하여 資本의 蠶蝕과 生活水準의 低下를 招來하였고, 이것은 私債依存度를 다시 높여 漁民의 生活를 貧益貧으로 몰아 넣었던 것이다.

國民經濟全體的 立場에서 볼 때 他産業에도 이와 같은 私金融에의 依存度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2,3次産業의 境遇에는 事前的 投資와 貯蓄의 差인 資金不足分을 여러 經路를 통해 調達할 수 있다. 즉 2,3次産業은 一般的인 資金供給經路인 金融市場(狹義), 政府直接金融, 證券市場, 外貨市場 등을 통해 資金調達이 可能하지만, 水産業과 같은 1次産業의 境遇는 資本制限으로 인해 金融市場으로부터 疏外당하며 資本制的 大企業形態의 産業構成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資金의 供給者와 需要者를 直接 金融市場인 證券市場을 통한 資本調達도 不可能하다. 또한 財政投融资로 볼 수 있는 政府直接金融의 境遇도 政府의 財政政策에 의해 資金供給이 이루어 지고 있으나 이는 水産金融의 絶對額에 比하면 大端히 不足한 狀態이다. 따라서 水産業部門의 金融形態는 水協과 一部金融

機關 그리고 私金融에 크게 依存하게 되는 것이다.

2. 財源別 資金構造

水協信用事業의 財源別 資金構成은 系統組織을 통해 形成되는 自體資金, 政府의 財政貸下金, 金融借入金, 外國借款資金의 4個部門으로 構成되고 있다.

1) 自體資金

水協의 信用事業은 發足初期부터 1960年末에 이르기까지 水産業의 構造的 特殊성과 信用事業基盤의 貧弱으로 豫受金, 出資金 등에 의한 自體資金調成이 不振하여 水産資金調達の 大部分을 政策金融인 財政貸下金에 依存하여 왔다. 말하자면 水産金融의 財源이 거의 財政金融資金에 依存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69년에 水協系統金融의 嚆矢라 볼 수 있는 100億원 自體資金造成5個年計劃이 樹立되고 이 計劃이 滿足할만한 成果를 達成하게 되자 다시 1974년부터 農漁村 1兆원貯蓄推進計劃이 樹立·推進되어 系統資金의 造成이 더욱 伸張되어 1980年 現在 水協의 系統資金造成比는 47.7%에 達하고 있음은 앞에서 指摘한 바 있다. 그러나 水協의 外部資金調達の 借入金依存度는 1969년부터 每年 減少하고 있으며 특히 1978년에는 오히려 自體資金이 55.8%, 外部資金이 44.2%로서 從來의 傳統的인 資金構造에서 完全히 逆轉된 現象을 보였다. 이는 水産金融의 資金調達 패턴이 過去의 財政資金등 借入金爲主에서 組合金融體制로 轉換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으나 아직도 他金融機關에 比하면 外部資金依存度가 深化되어 있다고 하겠다. 아무튼 水協의 自體資金造成運動은 過去의 政府財政資金을 主軸으로 한 政策金融一邊度에서 水協信用窓口를 통한 組合金融으로 水産資金調達 패턴의 轉換을 模索하였다는 點에서 매우 意義가 있다.

水協의 自體資金은 預受金, 相互金融, 出資金, 共濟基金의 4가지 經路에 의해 造成되고 있다. <表-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0年 現在 總自體資金造成實績은 1,737億원이며 이중 預受金이 1,257億원으로 72.4%, 相互金融이 243億원으로 13.9%, 出資金이 111億원으로 6.4%, 共濟基金이 126億원으로 7.3%를 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自體資金造成實績

<表-4> (單位: 億圓)

연도별	예수금	상호금융	출자금	공제기금	계	자금의 자체충족도(%)
1962	—	—	—	—	—	—
1963	1	—	—	—	1	—
1964	1	—	—	1	2	—
1965	2	—	—	1	3	—
1966	1	—	1	3	5	—
1967	5	—	1	4	10	—
1968	8	—	1	6	15	—
1969	23	—	1	7	31	16.7

수 산 경 영 른 집

1970	43	—	1	10	54	21.8
1971	49	—	1	14	64	20.2
1972	61	—	1	20	82	22.6
1973	91	—	6	26	123	29.7
1974	138	12	11	31	192	35.7
1975	217	27	18	32	294	41.5
1976	334	51	29	43	457	45.8
1977	469	75	43	95	639	44.8
1978	767	130	63	120	1,017	55.8
1979	889	170	93	73	1,283	48.1
1980	1,257	243	111	126	1,737	48.0
구성비(%)	72.4	13.9	6.4	7.3	100.0	48.0

註 ① 構成比는 1980年 基準值임.

② 資金의 自體充足度는 總運用資金에 대한 資體資金의 構成比임.

資料: 水協中央會, 水協20年史,

① 預受金

水協自體資金造成의 가장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역시 預受金이다. 물론 純粹한 水協自體資金構成要素로서의 預受金은 組合員 스스로의 自發的 貯蓄에 의한 資金造成이어야 하나, 水協으로서는 보다 많은 資金吸收를 위하여 組合運營에 支障이 없는 限 非組合員의 金融取扱도 許容하고 있다. 따라서 <表-4>에 나타난 預受金은 單純한 漁民에 의한 貯蓄뿐만 아니라, 一般都市人의 遊休資金까지 包含한 概念으로 把握하여야 할 것이다.

水協이 受信業務를 시작하게 된 것은 銀行法 第3條, 韓銀法 第10條의 規定에 依據 信用事業部門이 一個의 金融機關으로 認定되어 1968年 2月 9日에 이르러서 였으며, 1969年 全國系統組織에 13個의 受信店舖를 開設한 以來 段階的으로 受信窓口增設을 試圖한 結果 1975년에는 65個, 1980년에는

<表-5> 水協信用業務店舖設置推移 (단위: 개소)

	일반수신	내국환	국고수납	상호금융	계
1968	3	—	—	—	3
1969	13	—	—	—	13
1970	21	—	—	—	21
1971	34	—	—	—	34
1972	36	—	—	—	36
1973	45	9	—	—	54
1974	54	45	—	67	166
1975	65	57	29	77	228
1976	74	66	39	89	268

資料: 水協中央會, 水協20年史,

160個로 增加하였고 여기다 內國換取扱店舖, 國庫受納店舖, 相互金融取扱店舖를 合하면 共히 416個所로 그간 水協受信店舖의 大幅擴大를 가져왔다<表-5>.

또한 水協은 漁村實情에 適合한 新種貯蓄制度

水協發足以後の 水産金融에 관한 研究

의 開發에도 勞力을 기울인 끝에 새마을農漁民積金, 農漁民목돈마련貯蓄 등을 開發함으로써 貯蓄增大에 寄與해 왔음은 <表-6>에서 그 事實을 立證해 주고 있다.

수협의 예수금 형태별 실적 및 추이

<表-6>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중 앙 회			조 합			총 계				
	구분	요구불	저축성	계	요구불	저축성	계	요구불	저축성	총 계	평균 증가율
1969		640	1,200	1,840	97	94	191	737	1,294	2,031	0
1970		833	2,055	2,888	285	539	824	1,118	2,574	3,712	82.7
1971		606	2,137	2,743	506	924	1,430	1,112	3,061	4,173	12.4
1972		1,061	2,375	3,436	653	1,099	1,752	1,714	3,474	5,188	24.3
1973		1,079	3,712	4,791	1,292	1,564	2,856	2,371	5,276	7,647	47.4
1974		2,651	4,257	6,908	2,874	2,606	5,480	5,525	6,863	12,388	61.9
1975		4,649	5,846	10,495	4,923	5,187	10,110	9,572	11,033	20,605	66.3
1976		4,850	8,969	13,819	7,797	11,169	18,966	12,647	20,138	32,785	59.1
1977		8,407	13,101	21,508	11,732	17,154	28,886	20,139	30,255	40,394	23.2
1978		9,857	24,336	34,193	14,823	27,502	42,334	24,689	51,838	76,527	89.5
1979		13,106	29,451	42,557	17,436	35,411	52,847	30,542	64,862	95,404	24.7
1980		16,128	40,715	56,843	21,697	47,222	68,919	37,825	87,937	125,762	31.8
구성비(%)		—	—	45.2	—	—	54.8	30.1	69.9	100.0	43.6
		28.4	71.6	100.0	31.5	68.5	100.				
69/80 (비)		2.5	33.9	30.9	223.7	502.4	360.8	51.3	67.9	61.9	

註 : ① 구성비는 1980년 기준임.

② 요구불 예금에는 당좌, 별단, 보통, 기타의 예금이 포함됨.

③ 저축성예금에는 저축, 통지, 일반정기, 수산정기, 국민저축, 정기적금, 특별정기가계 기타 정기 예금이 포함됨.

資料 : 水協中央會, 水協 20年史,

② 相互金融

相互金融制度는 組合員의 遊休零細資金을 資金需要에 따라 相互融通함으로써 資金不足現象을 自律적으로 打開해 나가고자 하는데 그 根本理念을 둔 互惠金融이다.

우리나라의 相互金融은 1907년의 「地方金融組合」에서 그 淵源을 찾아볼 수 있으며, 1972年 8月 「信用協同組合法」이 制定公布됨에 따라 現在는 農協, 마을 金庫, 信用協同組合 및 水協의 一部 店舖에서 實施되고 있다, 이 相互金融制度는 依存金融에서 벗어나 自立金融體制를 確立하며 私債와 契를 誘引하여 이를 生産資金으로 充當하는 한편, 單位組合의 自己資本蓄積을 圖謀한다는데 그 目的이 있다.<sup>13)</sup> 이는 水産業에 있어서도 다를 바 없으며 水協이 組合員의 遊休零細資金을 吸收하여 이를

13) 朴東燮, 「信用事業」, 水協運營評價教授團, 韓國水産業協同組合運營政策을 위한 調查研究, 1976, pp. 91 ~ 93.

組合員相互間の 資金需給에 充當함으로써 會員間の 資金不足을 스스로 解決하여 高金利私債의 負擔을 輕減하고 組合員의 經濟的 社會的 利益을 增進하기 위해 農協에 이어 1974年 6月 10일부터 相互金融制度를 實施하였다.<sup>14)</sup>

漁村에 있어서 相互金融의 歷史는 傳來의 漁業契活動에서 그 由來를 찾아 볼 수 있으나 近代의인 相互金融은 1907年의 「地方金融組合」에서 시작되었으며 水協보다 빨리 이 制度를 導入한 農協은 1969年 8월에 150個의 單位組合을 對象으로 첫 實施를 보인 바 있다.<sup>15)</sup>

그러나 最近에 이르러 이것이 制度化하기 시작한 것은 역시 1972年 8月 2日 法律 第2333號로 制定된 「信用協同組合法」의 施行以後이며 水協은 1974年 6月 10日부터 中央會와 組合이 同時에 이 業務를 遂行하였다. 相互金融은 市中の 私金融이나 契동 前近代의인 金融方法에 依存해 왔던 漁村 資金을 組合金融으로 誘引하는데 成功하였으며, 이로 인해 漁民에 대한 生産資金의 供給擴大, 水協 自體資金造成에의 寄與 등의 經濟的 成果를 거두었다.

相互金融에 의한 資金調達實積은 <表-7>에서 보는 바와 같이 業務開始 7年만인 1980年 現在 331 億원의 實績을 올려 總水産資金調達額의 9.1%에 達하는 資金造成을 實現했다. 또한 相互金融取扱 店舖도 꾸준히 增加하여 74년에 67個, 78년에 99個, 80년에 121個로 그간 受信店舖가 急激히 擴張된 것을 알 수 있다.

水協의 相互金融資金 調達現況  
<表-7> (단위: 億원)

연 도	예탁금	차입금	기 타	합 계
1974	13	—	0.3	13(2.4)
1975	27	6	1	35(4.9)
1976	51	7	3	62(6.2)
1977	86	13	9	107(7.5)
1978	130	17	20	166(9.1)
1979	170	23	33	226(8.5)
1980	243	28	59	331(9.1)

註: ( )안의 숫자는 총수산자금조달액에 대한 상호 금융조달액의 비를 뜻함.

資料: 水協調査月報에서 作成

③ 出資金

組合員의 出資金이 系統資金의 一部가 됨은 물론이다. 協同組合이 事業을 運營하려면 資金이 必要하고, 이는 組合員의 出資를 통해 이루어 짐은 말할 必要가 없다. 組合員의 資格要件으로 1座以上の 出資가 必要하며 組合員은 이를 基盤으로 組合内の 意思決定에 參與할 수 있는 權限을 갖는다. 물론 組合員은 經濟的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小額의 出資가 보통이지만, 여기에 대해 出資者는 一定額의 報酬를 支給받는다. ICA의 協同組合原則에 의하면 組合은 出資한 組合에 대해 利濶配當보다 낮은 水準으로 利

子를 支拂하게 되어 있다. 이를 資本에 대한 利子制限原則이라 한다.<sup>16)</sup>

水協도 法 第142條 3項을 통해 剩餘金은 組合員의 出資金納入額에 따라 年10分의 範圍內에서 우선 配當하고 그 다음에 事業利用高에 比例하여 이를 配當하도록 되어 있다. 水協은 健全組合育成策의 一環으로 組合構成員의 出資座數增大에 努力한 結果 80年度末 現在 出資金額이 111億원에 達해 自

14) 上同, p. 91.

15) 水協中央會, 水協20年史, 1982, p. 410.

16) 鄭燦吉, 韓國協同組合의 發展,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3, p. 56.

#### 水協發足以後の 水産金融에 관한 研究

體資金의 6.4%, 總調達資金의 3.1%를 記錄했다. 그러나 水協도 人的 結合에 바탕을 둔 協同組織인 以上 組合員의 出資座數에 最高限度가 設定되어 있으며, 組合員도 水産業從事者일 수 밖에 없으므로 出資金을 통한 自體資金造成에도 制限이 있을 수 밖에 없다.

#### ④ 共濟基金

水協共濟事業은 組合員의 不意의 事故나 災害에 의해 發生하는 經濟的 損失을 保全함으로써 漁業 生産 및 組合員生活의 安全을 圖謀하자는데 根本的인 目的을 가지고 있다. 元來 共濟란 一定한 團體 또는 社會의 構成員이 서로 救濟하는 「協同組合共濟」 또는 「相互保險」으로서 水協共濟는 社會的 側面에서 保障機能, 貯蓄機能, 金融機能 및 社會保障制度의 補完機能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의 共濟事業은 1937年 9月 朝鮮漁業組合發足과 同時에 實施하여 1945年 8月 祖國光復과 同時에 中斷되었다가 1954年 12月 大韓水産中央會發足과 더불어 漁船共濟事業을, 그리고 1958年 4月에는 船員共濟事業을 實施하였다.<sup>17)</sup>

그리고 水協의 共濟事業은 1962年 4月 水協發足과 더불어 從來의 大韓水産中央會의 共濟事業을 引受함으로써 시작되었으며 그것은 保險業法의 適用을 받지않는 水産法 第132條 第1項 第6號의 規定에 의해서 實施되었다. 水協共濟는 大韓水産中央會에서 實施하는 共濟以外에 1963年 10月에는 새로이 長期性積立法의 漁船滿期共濟를 新設하고 1967年 6月에는 다시 水産製造業 및 加工業과 기타 水産陸上施設을 對象으로 하는 水産施設共濟를 新設하였으며<sup>18)</sup> 1970年 3月에는 厚生 및 子女共濟의 實施로 生命共濟事業도 新規事業으로 追加하여 相互扶助精神에 立脚한 協同組合共濟事業을 構築하게 되었다. 그런데 日本의 境遇 水産共濟事業은 1950年 12月 10日 水協法의 改定에 의해서 1951年 1月 20日 全國 水産業協同組合共濟會의 創立으로부터 시작되었다. 當初에는 火災共濟로 부터 시작하여 1952년에는 漁協任職員의 退職共濟를 그리고 1955년에는 厚生共濟, 1957年 5月에는 漁業共濟規定에 관한 農林省의 認可를 얻어 漁業共濟의 試驗實施를 했던 것이다. 漁業共濟의 試驗實施는 1957年 10월부터 1963년까지 7年間に 걸쳐 18個縣(우리나라의 道에 해당됨)을 對象으로하여 漁獲共濟와 漁具共濟를 中心으로 實施했으며 그 試驗實施의 結果를 基礎로 하여 1964年 6月 漁業災害補償法이 制定됨으로서 本格的으로 日本漁民의 宿願이든 恒久的인 共濟制度가 實施되었다고 한다.<sup>19)</sup>

水協共濟事業에는 크게 나누어 損害共濟와 生命共濟로 나눌 수 있고 損害共濟에는 漁船共濟, 船員共濟, 火災共濟 등이 있으며, 生命共濟에는 厚生共濟, 子女共濟, 貯蓄共濟, 教育共濟, 福祉共濟 등이 있다. 水協共濟는 事業方式에서 民營保險과 달리 一般事業費가 節減되어 그만큼 共濟料가 低廉할 뿐 아니라 節減된 事業費 및 利益金의 一部가 共濟還元事業을 통해 加入組合員에게 다시 還元된다. 共濟還元事業의 種類로는 共濟獎學事業, 共濟指定病院設置, 새마을 貸出事業의 3가지가 있는데 이는 共濟事業의 結果 積立된 共濟基金을 活用하여 이루어진다. 特히 새마을貸出事業의 境遇

17) 朴東燮, 前掲書, p.118.

18) 張設鎬, 「水産共濟에 관한 研究」, 韓國水産經營學會, 水産經營論集, 1976, p.9.

19) 上同, p.10.

漁民共濟貸出과 漁船共濟貸出을 通하여 漁村建設事業 및 所得增大事業의 支援과 共濟加入漁船의 遭難時 共濟金支給對象에서 除外되는 30%未滿의 分損漁船에 대한 被害復舊를 支援하는 金融的 役割을 遂行하고 있다.<sup>20)</sup>

2) 政府貸下金

水協은 經濟開發特別會計法 施行令 第4條에 依據 水協財政資金의 貸下機關으로 指定되어 1973년까지 資金調達의 大部分을 財政貸下金에 依存해 왔다. 水協이 信用事業을 위해 政府로부터 支援받고 있는 政府貸下金의 種類는 經特資金과 農安資金 및 國民投資基金 등이 있는데 經特資金은 보통 財政資金이라 불리는 것으로서 政府의 經濟開發計劃에 의한 水産振興事業에 必要한 投融资財源이 每年度 政府豫算에서 策定되고 이 중 融資部門에 대해서는 資金管理特別會計法에 의하여 水協을 貸下機關으로 指定하고 그 資金을 每年 水協에 貸下하고 있다. 이와같은 政府의 開發政策에 의해 貸下되는 資金을 經特資金이라 한다. 이資金은 1973년까지는 水協의 資金調達財源中 가장 큰 比重을 차지하여 왔으나 1974년부터 政府의 財政緊縮政策에 따라 財政資金의 新規貸下를 中止함으로써 漸次 그 比重이 減少하고 있음을 <表-8>에서 볼 수 있다. 政府의 이와같은 措置로 인해 水協의 資金調達패턴이 政策金融에서 組合金融으로 轉換하게 되나 그 結果 自體資金調達の 極大화가 水産金融의 主要課題로 되었다. 如何間 金利와 使用期間面에서 他借入金보다 훨씬 有利한 財政資金의 縮소는 結果的으로 水協의 資金供給活動에 많은 制約을 받게 된 것이다.

한편 農安基金은 水協이 農水産物價格安定法 施行令 第11條에 依據 農安基金融資機關으로 指定됨에 따라 政府로부터 借入하는 1年以內의 短期性低利資金으로서 主로 水産物價格支持事業과 備蓄事業에 使用된다. 水協은 이 農安資金을 1970년부터 貸付받아 運用해 오고 있으며 1980年 현재 總124억원에 달한다(表-8).

끝으로 國民投資基金은 1974年 2月 20日에 制定된 「國民投資基金運用基準」에 依據하여 1974년부터 水産業部門에 貸付하기 시작하였으며, 이 資金을 利用하여 漁民所得增大事業, 水産物養殖 및 沿近海 漁業開發事業에 대한 支援을 하였다. 그 貸付規模는 當初에 8億원에 不過하였으나 1977년에는 53억 원 1979년에는 135억원으로 急増하였다. 이는 最近 政府가 推進하고 있는 計劃造船事業 때문이었으며 1980년에는 事業不振으로 資金規模가 前年에 比해 52.6% 減少된 64억원의 借入에 不過했다(表-8).

수협의 재정자금 차입실적과 그 추이

<表-8> (단위:백만원)

연도별	구분	구분				계	총차입금 구성비(%)	평균증가율 (%)
		일반재정	대중자금	농안기금	국민투자기금			
1962		200	—	—	—	200	66.7	0
1963		497	—	—	—	497	79.8	148.5
1964		698	—	—	—	698	83.8	40.4
1965		1,256	363	—	—	1,619	87.0	131.9

20) 水協中央會, 前掲書, p. 439.

水協發足以後의 水産金融에 관한 研究

1966	1,963	363	—	—	2,326	87.2	43.7
1967	5,410	363	—	—	5,773	92.0	148.2
1968	7,871	363	—	—	8,234	90.0	42.6
1969	10,339	363	—	—	10,702	78.0	29.9
1970	11,541	1,554	—	—	13,095	76.8	22.4
1971	12,861	1,539	—	—	14,400	75.9	9.9
1972	16,742	2,104	2,726	—	21,572	78.3	49.8
1973	17,693	2,089	2,378	—	22,160	77.8	2.7
1974	12,197	4,251	3,103	800	20,351	69.6	△8.2
1975	11,502	4,206	2,870	800	19,378	59.2	△4.8
1976	13,326	4,131	2,643	800	21,100	47.5	8.9
1977	13,777	5,123	3,409	5,300	27,609	45.6	30.8
1978	13,592	6,184	4,924	6,100	30,800	45.9	11.6
1979	15,337	7,083	6,980	13,500	42,900	51.0	39.3
1980	22,726	24,615	12,448	6,411	66,200	56.3	54.3
구성비(%)	34.3	37.2	18.8	9.7	100.0		42.2
80/개시연도(배)	113.6	67.8	4.5	8.0	331.0		

주 : ① 구성비는 1980년 기준임

② 1979, 1980은 각 자료 불일치로 국민투자자금계수가 조정되어 있음

資料 : 水協中央會, 水協20年史

3) 金融借入金

水協의 金融借入金は 政府의 財政借入金과 水協自體資金으로 解決할 수 없는 過剩資金需要를 充當하기 위해 他金融機關으로 부터 借入한 資金이다. 金融借入金は 過去에는 諸金融機關을 通해 이루어졌으나, 現在는 韓銀과 農協밖에 없으며, 그중에서도 韓銀분이 거의 全部를 차지하고 있다.

1980年 現在 水協의 金融借入金を 보면 農協借入금이 19億원, 韓銀借入금이 559億원, 産銀借入금이 9億원으로 總587億원에 達한다.

① 農協借入金

水協의 金融借入金中 農協借入금이 차지하는 比重은 <表-9>에서 보는 바와 같이 漸次 減少하고 있으나 韓國銀行으로 부터 直接 資金을 借入할 수 없었던 1970年以前까지는 農協借入금이 水協金融借入金의 大部分을 차지하였다. 1963年, 1965年, 1974年에 各各 財政資金, 遠洋出漁資金이 農協에서 부터 水協으로 移管되었으며, 1970年부터는 水協이 直接 農水産物輸出資金을 取扱하게 되었고, 1976年에는 韓國銀行이 水協에 대해 水産資金特別支援體制를 마련하여줌으로써 農協借入金 依存體制에서 어느 程度 벗어났다고 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漁民所得增大資金, 被害復舊資金, 輸出支援資金은 農協을 通해 傳達받고 있는 實情이다.



② 韓銀借入金

水協은 1970年 2月 19日 農水産物輸出準備資金取扱機關으로 指定됨에 따라 韓國銀行으로 부터 直接 貸出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또한 同年 7月 15日 第6次 金融通貨運營委員會의 決議에 의해 韓國銀行의 再割引問題가 解決되었다.<sup>21)</sup> 이 두가지 事實은 水協이 韓銀과 直接的인 金融去來를 開始하게 된 重大한 契機가 되었으며 이 以後 水協의 韓銀借入金比重은 <表-9>에서 보는 바와같이 漸次 높아졌다.

1976年 韓銀은 水協에 대해 特別支援金融體制를 마련하여 沿近海漁民用 營漁資金의 貸出어음을

수협금융차입금구성과 차입실적

<表-9> (단위:백만원)

연도별	재원별 동협차입금 Borrowings form NACF	한은차입금 Borrowings from B. O. K	산은차입금	외환은행차입금	합	계	년평균증가율 (%)
1962	100	—	—	—	100	0	
1963	108	18	—	—	126	26.0	
1964	121	12	—	—	134	6.3	
1965	237	37	—	—	274	100.4	
1966	305	37	—	—	343	25.2	
1967	475	29	—	—	504	46.9	
1968	896	23	—	—	919	82.3	
1969	3,005	16	—	—	3,022	228.8	
1970	2,315	1,737	—	—	4,053	34.1	
1971	4,088	1,696	—	—	5,784	42.7	
1972	3,220	2,013	—	—	5,233	△9.5	
1973	3,113	2,517	—	—	5,631	7.6	
1974	5,686	4,027	—	—	9,713	72.5	
1975	7,646	6,496	—	—	14,143	45.6	
1976	6,854	17,245	—	—	24,100	70.4	
1977	6,934	31,269	1,000	—	39,203	62.7	
1978	6,307	35,967	1,000	500	43,774	11.6	
1979	6,821	50,382	1,000	—	58,203	32.9	
1980	1,900	55,974	900	—	58,774	0.9	
구성비(%)	3.3	95.2	1.5	—	—	46.7	

주: ① 대외차관자금은 제외  
 ② 산은 및 외환은행으로부터의 차입 계수 삽입  
 ③ 수협조사월보 기준  
 資料: 水協中央會, 水協20年史,

21) 上同, p. 405.

擔保로 擔保어음額面의 60%까지 貸出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一般市中銀行과 마찬가지로 어음擔保貸出이 完全히 制度化된 것이다.

#### 4) 借款資金

水協의 借款事業은 對日請求權資金에 의한 漁業協力資金借款事業, ADB借款事業, IBRD借款事業 등으로 構成되어 있다.

漁業協力資金借款事業은 1965年 韓日協定이 締結됨에 따라 日本에게서 提供받은 3億弗의 請求權資金中 9千萬弗을 漁業協力を 위한 資金으로 提供받기로 한데서 비롯되었다. 이 資金은 民間베이스의 商業借款으로서 利子が 比較的 低利라는 點을 들어 이중 4千萬弗을 沿近海育成資金으로 우선 配定하였으며, 政府의 支拂保證下에 水協中央會가 一括 借主가 됨으로써 借款事業을 시작하게 되었다. 水協中央會는 이 資金으로 漁船 및 水産物處理加工施設의 機資材를 導入하고 이를 國內實需要者에게 轉貸하는 方式의 借款事業을 實施하였으나 事業實績의 不振으로 事業途中 1千萬弗을 遠洋漁業에 轉用하고 말아 결국 이 事業의 借款規模는 3千萬弗에 그친 셈이 되고 말았다. 이와 같은 事業不振의 理由는 資金導入節次가 複雜하고 居置期間이 짧아 資金導入期間이 長期化하고 元利金償還이 어려운 때문이었다.

ADB 借款事業은 沿近海漁船의 動力改良 및 老朽機關代替와 鮫鯨網漁船의 國內建造 그리고 遠洋가다랭이 漁船을 導入함으로써 沿近海漁業振興과 輸出魚種漁獲을 위한 遠洋漁業開發의 促進을 目的으로 1972年 10月 10日 政府와 ADB間의 借款協定締結에 의해 1973년부터 導入하기 시작하였다. 그간의 實績은 1978년까지 13,300千弗을 導入하여 17.4%인 72,31千弗을 償還하고 殘額은 10,983千弗이다.<sup>22)</sup>

ADB借款協定이 締結된 무렵 IBRD와도 外資導入交渉을 벌여 1975年 1月 15日 光州圈 地域開發을 위한 總 2,095千弗의 借款交渉이 締結되었고, 이 事業의 一還으로 麗水水産센터가 建立되었으며, 1979年 9月 27日에는 다시 IBRD와 2,987千弗 借款導入契約을 締結해 水協中央會는 이 資金으로 農水産物流通構造改善事業을 實施하였다.<sup>23)</sup> 이와같이 各種 借款資金은 漁業生産力增大에 따른 施設基盤의 擴充에 큰 役割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 3. 用途別 資金構造

水産資金을 用途別로 區分하면 運轉資金과 施設資金으로 2大別할 수 있다. 運轉資金은 現 經營規模下에서 水産業의 維持·運營을 위해 必要한 短期性資金이며, 施設資金은 水産業의 擴大再生産을 위한 機械 및 設備購入에 必要한 中·長期性資金이라 할 수 있다. 運轉資金은 다시 沿近海漁民의 漁業活動에 必要한 營漁資金과 遠洋出漁資金으로 나눌 수 있다.

#### 1) 營漁資金

營漁資金은 沿近海漁場에서 水産動植物을 採捕 또는 養殖하는 事業의 運營에 所要되는 短期性運

22) 水協中央會, 韓國水産業團體史, 1980, p. 420.

23) 水協中央會, 水協20年史, 1982, p. 485.

수 산 경 영 론 집

轉資金으로서 漁船漁業의 出漁資金과 養殖漁業의 運營資金이 있다. 營漁資金의 總需要는 漁船勢力의 增加, 養殖漁場의 開發 및 漁場의 外延的 擴大에 따라 每年 增加하고 있으며, 特히 1973年末 世界를 휩쓴 石油波動의 影響으로 石油類 및 漁業資材價格이 上昇하여 營漁資金需要를 急増시켰다. 營漁資金供給實績은 <表-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每年 急増하여 1962年 0.5億원에서 1975年 127億원 1980년에는 882億원에 이르고 있다.

중앙회의 수산자금지원실적추이

(表-10) (단위: 억원)

연도별	자 금 공 급						경제사업 기 타	합 계
	출 금					계		
	영어자금	원양출어자금	중 강 기 개발자금	기 수 산 자 금	타			
1962	0.5	—	1.5	—	2	1	3	
1963	1	—	2	1	4	3	7	
1964	3	—	2	1	6	3	9	
1965	6	—	8	2	16	6	22	
1966	9	—	9	4	22	10	32	
1967	14	—	40	7	61	12	73	
1968	19	—	63	13	95	20	115	
1969	23	—	96	28	147	38	185	
1970	31	—	127	36	194	53	247	
1971	39	3	164	32	238	78	316	
1972	43	3	184	42	272	93	365	
1973	41	5	181	71	298	116	414	
1974	78	45	218	68	409	129	538	
1975	127	73	229	81	510	199	709	
1976	220	142	247	151	760	237	997	
1977	315	160	354	260	1,089	336	1,425	
1978	462	180	403	341	1,386	435	1,821	
1979	600	195	525	371	1,681	988	2,669	
1980	882	232	546	610	2,270	1,350	3,620	
구 성 비	24.4	6.4	15.1	16.8	(62.7)	37.3	100.0	
80/62 (배)	1,764.0	77.3	364.0	371	1,135.0	1,350	1,206.7	

資料：水協中央會, 水協20年史,

2) 遠洋出漁資金

遠洋出漁資金은 太平洋 大西洋 印度洋 등 海外漁場에 進出하는 遠洋漁業者를 對象으로 하는 短

### 水協發足以後의 水産金融에 관한 研究

期性貸出資金으로서 船員給料, 燃料費, 入漁料 등의 出漁經費支援을 目的으로 하고 있다. 水協의 遠洋出漁資金取扱은 1971년부터이며 當時의 取扱額은 3億원程度였으나 그 後 1974年 水産資金 一元化措置로 水協은 이 資金의 大部分을 取扱하고 있던 農協으로 부터 資金을 引取받아 水協의 遠洋出漁資金은 45億원 水準에 이르렀으며 그 後 꾸준히 伸張하여 1980년에는 250億원에 達했다. 그러나 最近 世界各國의 200海里 經濟水域宣布로 인한 國際漁業環境의 惡化로 遠洋漁業의 生産量이 계속 減退되고 있으며 따라서 遠洋出漁資金支援이 한층 더 必要하게 되었다.

#### 3) 施設資金

水協의 施設資金은 漁業의 擴大再生産을 위한 漁業設備와 漁村開發에 必要한 資金으로서 最少限 1年以上에서 8年을 超過하는 中長期性資金이다. 주로 漁船建造, 動力改良, 養殖施設, 水産物流通 및 處理加工施設 등에 利用되는 이 資金은 資金의 性格上 自然 高額이고 회임期間이 길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 資金에 대한 財源은 財政資金으로 充當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서도 言及한 바와 같이 1974년부터 政府의 財政資金新規貸付가 中止됨에 따라 財源은 自然 金融資金쪽으로 移轉하게 되었고 政府는 利差補償制度를 樹立하여 水協에 대한 補償을 해 주었다. 施設資金 즉 中長期開發資金供給은 <表-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꾸준히 增加하여 1962年 1.5億원에서 1976年 127億원, 1980년에는 546億원에 이르고 있다.

#### 4) 其他 運轉性資金

水協은 營漁資金과 遠洋出漁資金以外에도 短期性運轉資金으로서 輸出支援資金, 蒐集資金, 經濟事業資金, 製造資金 및 一般資金등 5種의 運轉性資金을 取扱하고 있다. 水協의 資金供給實績은 <表-10>에서 보는 바와 같다.

## V. 水協의 金融活動分析

### 1. 水協信用事業의 特質

水協의 信用事業은 元來 組合金融 또는 系統金融으로서 組合員의 經濟向上을 위한 相互金融을 營爲함을 本質로 하고있다. 여기에서 組合金融이라고 하는것은 組合員의 資金의 過不足을 組合員 自體의 힘으로 스스로 解決한다는 根本的인 理念下에 組合員 個個人들이 그들의 零細한 經濟的 基盤을 相互 協同하여 그들의 對外信用力을 높힘으로서 外部로부터 資金의 導入을 增進시키고 또한 組合員의 零細한 剩餘資金을 모아서 資金이 不足한 組合員에게 融資해 줌으로써 組合員의 資金의 過不足을 스스로 解決하여 그들의 社會的 經濟的 地位向上을 이루는데 그 本質이 있다.<sup>24)</sup> 말하자면 組合金融은 組合員 自身들의 資金의 過不足을 스스로 解決하려는데서 自主金融이고 組合員의 共同利益 增進을 위하여 資金의 有無相通을 기하는데서 相互金融이므로 무엇보다도 組合金融의 機能을 發揮하기 위해서는 自己資金의 增強이 必要한 것은 當然한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오늘날 水協의 信用事業이 組織面에서는 組合員을 構成員으로 하는 組合金融體制가 되고 있으나 그 機能面에서는 組合

24) 農協中央會, 韓國農業金融史, 1963, p. 290.

金融뿐만 아니라 政策金融과 一般商業金融이 아울러 取扱되고 있다. 즉 水協信用事業은 系統組織을 통한 自體資金에 의해 運營될 뿐아니라 政府의 財政資金貸下, 利差補償, 債務保證 등을 통해 政策金融을 受惠받고 있으며 水協信用業務의 窓口를 組合運營에 支障이 없는 限 非組合員에게도 開放하고 있다. 이러한 政策金融과 一般商業金融의 取扱은 協同組合本來의 性格을 變質시킨다기 보다는 組合金融을 支援하고 補完하는 役割을 遂行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慢性的인 資金不足狀態下에서의 水産金融의 보다 圓滑한 運用을 위해서 長期低利의 財政資金은 매우 緊要한 財源이며 都市遊休資金을 吸收해 水産部門에로의 流入을 促進하는 一般金融業務 또한 重要한 財源確保策인 것이다. 따라서 水協의 金融活動分析은 水協信用事業의 組合金融機能, 特殊銀行機能을 統合한 觀點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2. 水協信用事業 活動分析

水協의 信用事業이 水協發足以後 우리나라 水産金融制度上 主導的 役割을 擔當해 왔다면 과연 水協信用事業이 어느程度의 事業成果를 이룩했느냐 하는 것은 觀心事가 아닐 수 없다. 이는 두가지 觀點에서 考察해 보면 그 하나는 水協信用事業이 國民經濟的 觀點에서 漁家經濟發展에 얼마나 寄與했느냐는 總體的이고 巨視的인 活動分析이고, 다른 하나는 水協信用事業을 그 自體로서 하나의 經濟單位로 認識하고 이의 効率的 運用問題를 資金調達과 運用이라는 企業財務的 側面에서 分析하는 微視的 活動分析이다.

### 1) 總體的 分析

金融의 經濟的 機能이 貸與者로부터 借入者로의 資金移轉을 통한 金融資本의 限界生産力增大에 있다면, 水協信用事業窓口를 통해 引出된 資金도 窮極의으로는 漁家經濟의 生産力向上에 이바지 했다고 볼 수 있다. 水協이 供給하는 各種 長短期性 水産資金은 漁船規模擴大, 操業日數增加, 漁撈裝備近代化등 資金需要者에게 必要한 實質的인 擴大再生産의 基盤을 마련해 주는 것이므로 이는 결국 漁業生産增大를 통한 漁家所得向上을 가져다 주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水協信用事業의 金融活動이 漁家經濟發展에 미치는 效果의 正確한 測定은 이와같은 單純한 資料의 相互關聯性을 가지고는 分析하기 어렵다. 이는 資本의 流入에 따른 水産業部門의 實物資本과 金融資本의 蓄積樣態와 이들 相互間의 動態的 關聯性을 把握함으로써 비로소 可能하기 때문이다. 골드스미스(R. W. Goldsmith) 教授는 經濟發展에 따른 資本蓄積메카니즘을 金融關聯比率이라는 指標를 使用하여 分析하였다. 즉 有形資産蓄積殘高에 대한 金融資産蓄積殘高의 比率인 金融關聯比率이 經濟成長이 進行됨에 따라 漸漸 增加하게 된다는 事實을 發見하고 이 比率의 相互比較를 통해 一國의 經濟成長程度의 測定이 可能하다고 主張하였다.<sup>25)</sup> 金融關聯比率을 水産業部門에 局限시켜 考慮해 볼 때 漁民이 保有하고 있는 有形資産과 金融資産의 比率인 金融關聯比率의 增減은 貨幣的 觀點에서의 漁家經濟發展趨勢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물론 水産部門의 資本蓄積이 水協金融

25) 李承潤, 貨幣金融新論, 法文社, 1973, p. 404.

## 水協發足以後의 水産金融에 관한 研究

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나 水産部門資金需要의 가장 커다란 供給源인 水協信用事業의 金融活動이 이와같은 資本蓄積樣態의 形成에 큰 影響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金融聯關比率의 測定은 水協信用事業活動分析에 대한 間接的 指標를 意味한다. 事實 金融聯關比率은 金融의 資金分配와 仲介技術의 發展程度를 表示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比率의 上昇은 결국 金融의 健全<sup>26)</sup>을 증하는 金融構造의 高度化를 意味한다고 볼 수 있다.

### 2) 資金調達活動分析

水協의 信用事業利用對象이 一般 與受信者에게까지 擴大하고 이에 따른 金融서비스 技法도 多樣化됨에 따라 水協의 信用事業도 하나의 金融機關으로서의 效率性을 念頭에 두지 않을 수 없게 되는 한편 水協自身이 所有하고 있는 資産構成에도 觀心을 쏟게 된다.

一般的으로 現代金融機關의 經營技法의 흐름은 資産管理의 側面에서 負債管理의 側面으로 移行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sup>27)</sup> 하나의 經濟主體로서의 銀行經營戰略이 充分한 流動性과 支拂可能性의 確保下에 利益을 極大化시키는 것이라면 資産管理側面의 經營技法은 流動性을 確保하기 위한 手段으로 資産項目에 關心을 갖는다. 즉 銀行資産을 構成하는 現金, 預置金, 有價證券 등은 流動性이 매우 높은 反面에 오히려 收益性은 낮고, 貸出金, 投資資産 등은 流動性이 낮은 反面에 收益性은 높으므로 이들 資産의 保有를 適切히 調整함으로써 最適 포오트폴리오(portfolio)를 構成하는 것을 이 理論의 目標로 삼는다. 反面에 1960年代부터 시작된 負債管理側面의 理論은 資産管理와는 달리 流動性確保의 手段으로 負債를 使用한다. 즉 銀行은 銀行自體의 流動性이 不足할 때 貸出金이나 投資資産을 回收하여 流動性에 充當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低廉한 利子의 短期金融資金<sup>28)</sup>을 借入해 음으로써 充當해 나가는 것이다. 이때 銀行의 利益은 물론 短期金融市場에서 借入한 資金을 運用함으로써 들어오는 利子收益과 借入元金에 대한 利子支出의 差이다. 따라서 負債管理側面의 銀行經營技法의 特點은 資金調達時 資本費用은 低廉한 資金을 많이 確保하는 데 있다고 하겠다.

金融業에 있어서의 資本費用은 各種 資本調達源에 대한 利子和 諸般附帶費用을 意味하며 水協信用事業의 境遇도 역시 系統資金, 財政資金, 金融資金의 各項目에 대한 支給利子和 調達費用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1982年 水協中央會에서 調査, 集計한 資金調達原價를 分析해 보면 <表-11>과 같다. 同年 水協信用事業의 資本調達費用은 總31,884百萬元으로 同期間의 總資本調達額 309,531百萬元의 10.3%에 達하고 있다. 이를 支給利子和 調達損費로 나누어 보면 支給利자가 26.16百萬元으로 總調達額의 8.5%, 調達損費가 5,568百萬元으로 1.8%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財源別로는 預受金の 境遇에 總原價率 즉 資本費用이 15.1%, 借入金은 8.0%, 會員換決濟는 10.8%로 나타나 預受金은 借入金에 비해 資本費用이 相當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26) 投資者의 豫想投資收益率과 貯蓄者의 資金貸付를 통해 얻는 純利潤間의 差異로서 이 gap이 크면 클수록 貯蓄者로 부터 投資者로의 資金移轉이 어려워진다.

27) D.S. Kidwell & R.L. Peterson, Financial Institutions, markets and money, The Dryden Press, 1981, pp.193~198.

28) 美國의 境遇 이와같은 短期金融資金으로는 negotiable certificates of deposit (CDs), Federal Funds, Repurchase agreements, Eurodollar borrowing 등이 있다.

수 산 경 영 른 집

調 達 原 價 分 析 (1982年 基準值)

<表-11>

(單位：百萬圓)

區 分	調達金額 (平均)	支 給 利 子		調 達 損 費		計	
		金 額	原 價 率	金 額	原 價 率	金 額	原 價 率
合 計	309,531	26,316	8.5	5,568	1.8	31,884	10.3
預 受 金	83,223	8,691	10.4	3,904	4.7	12,595	15.1
小 計	157,644	11,967	7.6	590	0.4	12,557	8.0
借 入							
政府貸下金	54,966	4,874	8.9	206	0.4	5,080	9.3
金融與信	69,534	3,641	5.2	260	0.4	3,901	5.6
國民投資	24,668	2,610	10.6	92	0.4	2,702	11.0
農漁民後繼者	1,524	61	4.0	6	0.4	67	4.4
水產振興基金	1,204	112	9.2	4	0.4	116	9.6
輸出支援金融	1,501	76	5.1	6	0.4	82	5.5
外貨借入	4,247	593	13.9	16	0.4	609	14.3
會 員 換 洪 濟	45,717	4,669	10.2	288	0.6	4,957	10.8
其 他	22,947	989	4.3	786	3.4	1,775	7.7

※ 其他의 支給利子는 特別會計利子, 與信管理資金利子, 會員支準利子, 콜머니利子 등임.  
資料：水協中央會, 原價分析, 1982, p. 27.

이는 물론 支給利子에서도 差異가 나지만 調達損費에서도 많은 差異가 있어 水協이 預受金吸收를 위해 各種 金融서비스를 提供할 수 있는 設備와 人員을 必要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水協이 信用事業自體의 效率性을 提高키 위해서는 政府貸下金, 金融借入金, 農漁民後繼者育成資金, 輸出支援金融등 資本費用이 적은 資金을 多量確保하는 것이 무엇보다 重要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資金은 大體的으로 政府의 經濟計劃下에 움직이는 政策資金이므로 水協自體로 보아서는 統制하기 困難한 資金이다.

水協信用事業의 資金調達管理의 效率性을 測定하는 또 하나의 指標는 預受金回轉率을 들 수 있다. 預受金回轉率이란 預金主의 引出要請에 의한 期中總支出額을 預受金平殘으로 나눈 값으로 預受金의 安定度를 測定하는 比率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預受金回轉率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不安定한 預金이며 그 反對이면 그만큼 利用可能度가 큰 安定한 預金이라 할 수 있다. 水協中央會 刊「原價分析」에 의하면 1982년에 預受金回轉率이 24.5回轉으로 1981年の 28回轉보다 3.5回轉 낮아졌으며 要求拂預金の 回轉率은 85.8回轉, 貯蓄性預金の 回轉率은 5.3回轉으로 81年 다 각각 29.1回轉, 10回轉 낮아져 預受金 安定度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3) 資金運用活動分析

銀行의 流動性確保手段으로 負債 즉 資金調達側面의 機能이 強調됨에 따라 資本費用이 低廉한 資金의 多量確保가 銀行經營의 가장 重大한 關心事로 부각하고 있다. 그러나 資金調達側面이 強調

水協發足以後の 水産金融에 관한 研究

된다고 해서 相對的으로 資金運用側面이 無視되어도 좋다는 것은 決코 아니다. 資金調達과 運用은 流動性, 支拂可能性, 收益性의 同時確保라는 金融機關의 健全經營原則을 지켜나가는데 相互補完的인 役割을 遂行하기 때문이다.

水協은 1982年 現在 調達資金中 96.8%가 收益性資産으로 運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同「原價分析」에 의하면 1982年度 調達資金平殘 309,531百萬元中 收益性資産平殘이 299,431百萬元으로 나타나 1981年の 收益性資産運用比率 94.4%를 2.4% 上廻하고 있다. 이는 流動性이 確保된다는 前提條件이 充足되는 限 바람직한 現象이며 水協資金의 運用効率의 増大를 意味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收益性資産도 運用內譯에 따라 收益程度가 다르다. 즉 높은 利子를 支給받을 수 있는 運用處가 있는 反面에 比較的 낮은 利子밖에 받지 못하는 運營處도 있다.

〈表-12〉에 의하면 「콜론」의 境遇 14.7%의 높은 收益率을 記錄하였으나 預置金은 7.8%의 收益밖에 올리지 못하고 있다. 貸出金은 運用資金平殘 263,676百萬元에 收入利子 30,195百萬元, 收入手數料 82百萬元 都合 30,277百萬元을 記錄해 總貸出資金의 11.5%에 該當하는 收益率을 나타냈다. 水協信用事業의 目標을 單純한 水協信用事業自體의 利益確保에 둔다면 餘裕資金의 全額을 보다 收益性이 높은 資金運用處에 貸與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水協信用事業의 目標가 어디까지나 水産資金의 圓滑한 供給에 있는만큼 現在의 水産資金需要를 度外視 한 채 資金移殖에만 神經을 써서는 困難하다. 高利率에의 資金運用은 水協의 財源을 튼튼히 하고 未來의 보다 圓滑한 資金供給을 위한 手段이지 一般銀行과 같이 그 自體가 目的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表-12〉 收益分析 (1982年 基準值) (單位:百萬元, %)

運用內譯	運用資金平殘	收入利子		其他收益		合計	
		金額	%	金額	%	金額	%
貸出金	263,676	30,195	11.5	82	—	30,277	11.5
預置金	21,479	1,681	7.8	—	—	1,681	7.8
콜론	6,306	928	14.7	—	—	928	14.7
他産業轉出	7,333	661	9.0	—	—	661	9.0
其他	10,737	154	1.4	1,801	16.8	1,955	18.2
合計	309,531	33,619	10.86	1,883	0.61	35,502	11.47

※ 1) 比率은 當該運用資金 平殘에 對한 比率임.  
 2) 貸出金의 其他收益은 收入手數料(鑑定料)임.  
 3) 其他의 收入利子는 有價證券利子, 假支給利子 等임.  
 資料: 水協中央會, 原價分析.

또 運用資金의 回轉率을 살펴봄으로써 資金運用의 効率性을 分析해 볼 수 있다. 運用資金의 回轉率은 年間 貸出金平均殘額에 대한 期中回收額의 比率로서 運用資金의 流動性을 把握하는데 使用될 수 있다. 同「原價分析」에 의하면 1982年の 貸出金回轉率은 1.1回轉으로 前年度에 비해 0.1回轉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短期性資金인 運轉資金의 回轉率은 1.4回轉, 長期性資金인 施設資金의 回轉率은 0.2回轉으로 各各 나타났다.



수 산 경 영 른 집

水協貸出金中 回收不能으로 固定化되어 있는 延滯貸出金の 推移도 水協信用事業의 資金運用効率을 測定하는 指標가 될 것이다. <表-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延滯貸出金比率은 漸次 減少하고 있다. 1973年度는 總貸出金 24,850百萬元中 延滯額이 2,164百萬元으로 8.7%의 延滯率을 보이고 있으나 75년에는 6.5%, 78年 2.8%, 80年 1.6%, 82年 1.2%로 漸次的인 減少趨勢에 있어 이는 水協의 効率的인 指導金融과 徹底한 事後管理의 結果로 볼 수 있다. 延滯貸出金推移를 財源別로 보면 財政資金이 金融資金에 비해 延滯率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大體로 長期性資金이 短期性資金보다 延滯率이 높다고 할 수 있다.

<表-13> 延 滯 貸 出 金 現 況 (單位：百萬元)

區 分		73		75		78		80		82	
		延滯額	率	延滯額	率	延滯額	率	延滯額	率	延滯額	率
財源別	財 政 資 金	1,618	10.2	1,784	1.6	1,307	5.3	1,322	2.4	990	1.1
	金 融 資 金	546	6.1	303	3.3	1,607	2.0	1,738	1.5	2,566	1.3
用途別	運 轉 資 金	1,072	8.7	967	4.0	1,649	2.2	1,846	1.4	2,364	0.8
	施 設 資 金	1,092	8.8	1,620	10.8	1,265	5.6	1,214	2.2	1,192	1.5
合 計		2,164	8.7	2,587	6.5	2,914	2.8	3,060	1.6	3,556	1.2

資料：水協中央會，年次報告書，1973~1982에서 作成

VI. 水協信用事業의 問題點

1. 資金調達能力貧弱

水協의 資金調達源을 自體資金, 政府貸下金, 金融借入金으로 大別한다면 이 중 自體資金의 調達能力이 眞實한 意味의 水協信用事業의 資金調達能力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政府貸下金, 金融借入金등 政策金融은 政府의 經濟政策下에서 實行되는 外的變數이기 때문이다.

1981年末 現在 水協의 預金實績은 1,700億원으로 우리나라 預金銀行總預金額 170,504億원의 1.0%에 不過한 것으로 나타났다<表-14>. 이는 우리나라의 漁家人口가 總人口의 2.2%이고, 水産業部門의 GNP寄與率이 2.1%인데 比하면 매우 低調한 숫자이다. 또한 水協의 信用事業實施店舖當 預受金を 他金融機關과 比較해 보면 <表-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1年末 現在 水協의 店舖當 平均預受金은 16億원으로서, 一般市中銀行의 142億원, 地方銀行의 46億원, 農協의 41億원에 훨씬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水協의 資金動員能力이 微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이와같은 事實은 漁村의 零細性에 基因하는 것이라고 하겠지만 이를 위한 水協信用事業自體에도 보다 運用의 妙를 기할 必要가 있다. 즉 漁村의 遊休資金을 보다 効率的으로 吸收할 수 있는 貯蓄制度의 構想이라든지, 보다 資金코스트가 低廉한 要求拂預金の 多量確保, 流動資金이 豊富한 都市金融市場의 資金吸收 등을 보다 圓滿히 遂行함으로써 根本的인 資金不足을 어느 程度 解決할 수

<表-14> 預金銀行, 農水協 預受金 現況

	예금은행 총예금 <sup>1)</sup>		農 協 預 金		水 協 預 金	
	금 액	%	금 액	%	금 액	%
1970	(억원) 7,897	100.0	(억원) 954	12.1	(억원) 41	0.5
1975	28,123	100.0	2,595	9.2	221	0.8
1980	124,219	100.0	11,721	9.4	1,261	1.0
1981	170,504	100.0	14,986	8.8	1,700	1.0

1) 預金銀行=5億 市中銀行+10個 地方銀行+36個 外銀支店+特殊銀行(外換銀, 企銀, 國民銀, 住宅銀, 農水協)

資料: 鄭燦吉, 韓國協同組合의 發展, 1983. p.314.

<表-15> 銀行別 店舖當 預受金 現況

		시중은행	지방은행	농 협	수 협
1979	예 수 금(억원)	49,903	9,601	10,022	973
	점 포 수(개소)	566	306	370	102
	점포당평균(억원)	83	31	27	10
1980	예 수 금(억원)	64,177	10,978	11,721	1,261
	점 포 수(개소)	594	319	370	106
	점포당평균(억원)	108	34	32	12
1981	예 수 금(억원)	91,025	15,792	14,986	1,700
	점 포 수(개소)	643	341	370	108
	점포당평균(억원)	142	46	41	16

資料: 鄭燦吉, 韓國協同組合의 發展, 1983. p.315.

있다. 특히 水協이 보다 많은 預受金確保를 위해 非組合員에게도 門戶를 開放하고 있는 以上 都市 流動資金을 거양한 水協都市店舖의 增設이 必要하다고 볼 수 있다. 1981年末 現在 水協의 一般受信 店舖 108個中 서울, 부산, 道廳所在地등 大都市에 位置한 店舖는 33個에 不過하며 나머지는 市廳 혹은 道廳所在地以下에 位置하고 있어 漁村偏在現象이 뚜렷하다고 할 수 있다.

## 2. 金融業務基盤脆弱

水協信用事業은 業務를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아 金融業務全般에 대한 基盤이 脆弱한 實情이다. 銀行店舖의 全般的 設備能力을 意味하는 店舖當 勞動裝備率이 水協의 境遇 一般市中銀行보다 훨씬 낮아 一般市中銀行과의 競爭에 있어 劣勢에 놓여 있다. 1980年末 水協, 그중에서도 預受金動員能力이 높은 水協中央會의 서울店舖의 信用事業從事者 一人當 勞動裝備率은 4.4百萬元인데 比하여 一般市中銀行은 商業銀行이 13.1百萬元, 第一銀行이 11.7百萬元이다. 이는 水協信用事業의 裝備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으며<sup>29)</sup> 이러한 事實은 결국 水協의 對顧客서비스가 一般銀行에 뒤진다는 뜻도 되며 또한 最近 金融自律化에 따른 他金融機關의 多様な 金融서비스開發 趨勢에도 따라가지 못한다는 뜻도 되는 것이다. 事實 1962年 水協發足以後 興信業務, 受信業務, 相互金融業務를 차례로 開始해 왔으며 最近에 와서는 內國換業務, 借款業務 뿐만 아니라 乙類 外國換銀行으로 指定됨에 따라 外國換業務도 實施하게 되었으나 아직 一般市中銀行에 比하면 金融서비스機能이 不足한 實情이다. 이는 물론 水協信用事業의 規模나 資金水準이 一般市中銀行처럼 最新金融技法을 遂行할 必要가 있을 程度로 成熟되지 못한 理由도 있지만 水協이 一般大衆으로부터 보다 많은 資金을 吸收하기 위해서는 多様な 金融서비스開發에도 많은 關心을 가져야 할 것이다.

### 3. 相互金融制度上的 問題

相互金融은 經濟的으로나 社會的으로 劣勢에 있는 組合員들 間的 相互 互惠金融으로서 特別히 制度的으로 保護되어 있다. 그런데 水協의 相互金融制系는 下部組織인 漁村契의 未發達로 中央會와 會員組合에서 相互金融과 一般 受信業務를 同時에 取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相互金融對象에 比較的 大規模經營形態를 갖춘 業種別組合을 包含시킴으로써 이는 相互金融 本來의 意味를 벗어나고 있다고 하겠다. 그 例로서 業種別組合들은 一般的으로 組合員數가 地區別組合員數보다 적고, 業種別組合들의 組合員은 地區別組合들의 組合員에 比하여 資產規模가 클 뿐만 아니라 所得水準도 매우 높은 一種의 大規模經營集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大規模經營家들이 互惠金融의 目的으로 組合金融을 實施하는 것은 互惠金融이 經濟的으로 劣勢한 組合員間的 小規模的인 資本調達과 融通이라는 그 本來의 意味와 상치된다고 할 수 있다.<sup>30)</sup> 이와 같이 相互金融制度上的 問題는 相互金融制度의 圓滿한 發展을 阻害하는 結果를 招來할 수 있다.

## VII. 結 言

水協發足以後의 水産金融을 論함에 있어 가장 中心된 課題는 역시 水協信用事業機能의 活性化가 아닐 수 없다. 傳統的으로 水産金融은 慢性的인 資金不足現象으로 말미암아 水産業者에게 必要資金의 需要를 如何히 充足시켜 나가느냐 하는 資金供給의 効率性側面에 그 초점이 주어져 왔다. 즉 水産業은 그 構造的 特質로 인하여 自體資金調達의 어려움은 물론 金融市場으로부터의 資金借入은 極히 制限되어 있어 이를 克服하는 現實的 方案으로서는 水協을 통한 金融體制의 確立밖에 없었다. 따라서 水協의 信用事業이 水産金融의 救心體的 機關으로 登場하게 되었고 이의 活性化가 水産金融改善의 主된 關鍵이 된 것이다.

問題는 水協信用事業이 그 組織이나 機能上에서 볼 때 첫째는 水協信用은 制度的 組合金融으로서 資金供給能力이 不足한 것이다. 이와 같은 資金供給能力의 不足은 私金融에의 依存을 擴大시키는 것으로서 漁民들은 資金이 必要할 境遇 資金借入에 따른 費用을 考慮한 效率의 資本調達이란 觀點을

29) 鄭燦吉, 前掲書, p. 318.

30) 上同, pp. 319-320.

#### 水協發足以後의 水産金融에 관한 研究

며나 私金融을 통해 우선 必要한 資金의 確保에만 汲汲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水協信用事業의 資金供給能力을 擴大하고 私金融을 組和金融으로 吸收하기 위해서는 水協의 財源確保와 融資節次 및 時期의 簡素化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産業構造上의 歪曲을 防止하고 均衡成長을 이룩한다는 政策目標下에 長期低利의 財政資金이 充分히 供給되어야 할 것은 물론, 自體資金造成을 위한 漁民貯蓄에 租稅上의 特惠, 獎勵金支給, 인플레補償등 優待措置가 講究되어야 할 것이다. 또 中長期施設資金確保를 위해 借款事業을 통한 外資導入도 아울러 推進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는 水協의 資金動員能力을 提高기 위해 勞動裝備率을 大幅 增加시킬 必要가 있다. 水協이 一般市中資金을 吸收하기 위해서는 他金融機關과 競爭하지 않을 수 없는 以上 有利한 競爭을 위해서는 多樣的 金融서비스의 開發과 店舖網의 擴大가 時急하다. 特히 漁村偏在의 店舖網을 都市中心으로 轉換하것금 誘導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는 相互金融業務의 圓滑化를 기하고 水協의 實質的인 2段階組織의 定着을 위하여 極히 零細한 法人漁村契의 相互金融制度를 再考하고 萬若 그것이 바람직하다면 會員組合을 相互金融專擔機關으로, 또 水協中央會는 都市店舖를 強化하여 一般受信專擔機關으로 運營하는 것도 考慮해 볼 수 있다.

끝으로 融資金의 投資效果를 높이기 위하여 指導金融과 事後管理體制를 講究할 必要가 있다. 水協貸出資金이 非生産的 消費金融에 使用되지 않도록 資金의 具體的 使用方法을 指導하고 延滯貸出금이 생기지 않도록 事後管理를 強化하여 資金의 効率性을 높여야 할 것이다. 以上과 같은 改善方案을 遂行해 나가는 데는 역시 政府와 水協 그리고 漁民들의 積極的인 協調가 必要함은 말할 것도 없다.

## A Study on Fisheries Financing after Establishment of Fisheries Cooperatives

Kyoung-Ho Kim

### Summary

After Liberation of Korea, Korean fisheries economy fell into an exhausted conditions because of the damage of Japanese colonization policy and the Korean War, and fisheries organizations of those days established for the improvement of fishermen's welfare could not carry out their primary purposes and functions.

Under such circumstances, Fisheries Cooperatives starting on April 1st in 1961 played a great role in settling the socio-economic confusion of those days. Fisheries financing was also more systematic and substantial after establishment of Fisheries Cooperatives. In fact fisheries industry was faced with much more riskiness than any other industry on account of its speciality and such a riskiness induced general financial institutions to be reluctant to lend money to the fishermen. In order to overcome such a capital rationing, it was necessary to establish the reciprocal financing system based on the principle of mutual protection of economic weakers.

Credit business in Fisheries Cooperatives beginning in 1963 was mainly dependent on governmental fund as fund sources. But the size of fund was too small to satisfy fishermen's fund demand, therefore Fisheries Cooperatives carried out the movement of raising its own fund. As a result of the movement the ratio of its own fund to total funds amounted to 47.7% in 1980, but external funds still take a greater part of all funds.

To settle the weakness of the ratio of its own fund and chronic deficiency of fund, a conclusion can be drawn as follows:

1. The enlargement of Fisheries Cooperatives' raising ability of funds.
  - The expansion of urban branch to absorb idle funds in urban area.
  - The diversification of financing service to compete with general financial institutions.
2. The enlargement of governmental fund and preferential treatment of fishermen's savings.
3. Vitalization of mutual finance and fix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s' two-phase organization.
4. The re-enforcement of supervisory financing and post management system.